

#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~5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3. 7
제출자	거창군수

## ■ 개정이유
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이 개정·공포(대통령령 제19270호, 2006. 1. 12)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여비 등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## ■ 주요내용

-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출장여행시간이
  - 4시간이상인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를 “1만원”에서 “2만원”으로 4시간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“5천원”에서 “1만원”으로 인상함.
  -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의 일비는 “5천원”에서 “1만원”으로 감하여 지급함.
-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따라
  - 숙박비 단가 : 제3호(4-5급)의 25,000원과 제4호(6급이하)의 22,000원  
⇒ 30,000원으로 인상됨.
  - 식비의 단가 : 제3호(4-5급)의 18,000원과 제4호(6급이하)의 15,000원  
⇒ 20,000원으로 인상됨.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6. 1. 1부터 적용(부칙)

## ■ 개정근거

- 「공무원 여비규정」(대통령령 제19270호, 2006. 1. 12)

거창군조례 제 호

##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제3조중 “1만원”을 “2만원”으로 “5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하고, 동조단서중 “5천원”을 “1만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6. 1. 1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여비)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규정」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<u>1만원</u>을, 4시간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<u>5천원</u>을 지급한다. 다만, 「관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,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<u>5천원</u>을 감하여 지급한다.</p>	<p>제3조(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여비) ----- ----- ----- -----<u>2만원</u>----- -----<u>1만원</u>-----다만,----- ----- -----<u>1만</u> <u>원</u>-----.</p>